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6.

발 의 자 : 허종식 · 유동수 · 박찬대
노종면 · 김교홍 · 이훈기
박 정 · 허성무 · 복기왕
이재관 · 최혁진 · 이용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·지방자치단체는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 처리·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아울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그의 설치·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도시개발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업용지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.

이에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도 공공

폐수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함(안 제48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(중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까지의”를 “제4호까지의”로 한다.

4. 「도시개발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·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(생략)	자 5. -----제4호까지의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-